

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

제정 2025. 5. 22.

제1조(사업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/한국연구재단에서 상지대학교(이하 ‘대학’ 이라 한다.)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(이하 ‘사업’ 이라 한다.)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기간) 총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사업 종료시까지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,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대학혁신사업단) ① 사업의 시행 및 성과 모니터링,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대학혁신사업단(이하 ‘사업단’ 이라 한다.)을 둔다.

② 사업단에는 단장과 팀장, 전담인력을 둔다.

③ 전담인력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④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사업 세부계획 수립
2. 사업 추진 및 실적 관리
3. 사업비 예산 배정 및 운영, 결산
4.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, 결과 분석 및 계획 조정
5.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

제5조(대학혁신위원회)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상의 혁신전략에 근거한 투자계획 수립 및 자체 성과관리 등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총장으로 하며, 위원은 부총장, 교무연구처장, 기획처장, 학생취업지원처장, 대외협력처장, 행정지원처장, 대학혁신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재학생 포함 11명으로 구성한다.

③ 대학혁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1. 대학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
2. 전략과제의 운영방향 및 사업비 집행의 기본 방침 설정
3.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주요 추진성과의 종합 평가
4. 관련 운영규정 및 세칙의 제정·개정·폐지
5. 기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

제6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(이하 '운영위원회'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, 교무위원, 외부전문가, 재학생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1.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및 세부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사항
2. 예산편성, 사업비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내부 모니터링
4.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의 검토 및 개선안 반영
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운영 관련 사항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성과관리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총장이 교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, 재직중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을 포함한다.

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1.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진단
2.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컨설팅
3.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운영 및 성과창출 요소 발굴·확산
4. 기타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자체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 및 대학혁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비) ① 사업비는 대학혁신사업단에서 총괄 관리한다.

② 사업비 중앙관리부서는 사업단으로 한다.

③ 사업비는 「상지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사업비 집행 지침」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관리한다.

④ 사업연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(정산보고서)를 제출한다.

제9조(관련 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/한국연구재단,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규정 제·개정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의 규정류 제·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234, 2025. 05. 22.)

이 규정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